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1월 2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지식서비스과 이상훈 과장(2110-4770), 지민정 사무관(2110-4772)		

지경부와 교과부의 이러닝 협력, 밀고 당겨준다.

- 1.26(木)「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시행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: 홍석우)는 작년 2011년 6월「이러닝산업발전법」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금년 1월 26일(木)부터 개정된 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힘

○ 특히, 이번 법령 개정은 이러닝 산업(공급)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이러닝 보급·확산(수요)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긴밀히 협업한 결과임

* 이러닝진흥위원회 (위원장 : 지경부 차관, 부위원장 : 교과부 고위공무원)

○ 이에 법률이름도「이러닝산업발전법」에서「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고 세부적인 법률 시행사항을 마련하였음

□ 우선, 이러닝 산업 육성을 위해

○ (사업자 신고제도 시행) 이러닝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중에서 산업체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 이러닝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

○ (대기업 참여제한) "이러닝 콘텐츠 제작사업" 및 "지경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 사업"을 대기업의 참여제한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,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

* 이외, 이러닝시스템 구축사업은 소프트웨어 기반 SI사업이므로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따라 적용됨

○ (정부의 기본계획) 빠르게 변화하는 이러닝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"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기본계획"의 수립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음

□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해

○ (표준화, 품질인증 기관) 이러닝 표준화 사업, 품질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기존 지경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추가하여 교과부 산하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지정하였음

○ (보급·활용 대상 확대) 교과부 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해 이러닝 콘텐츠, 이러닝 시스템 등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

- 지경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능력 제고를 위해 산업인력에 대한 이러닝 교육·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

□ 앞으로 지경부는 산업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이러닝 사업자 신고 요령, 이러닝 표준약관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

○ 또한 이러닝 사업자 신고제도 등 개정된 법령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건전한 이러닝 생태계가 조성되고 이러닝 확산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